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827

발의연월일 : 2026. 5. 6.

발 의 자 : 이연희・이광희・임미애
김정호・박상혁・염태영
박용갑・한민수・안태준
박홍배・이정문・정준호
복기왕・손명수・이춘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요응답형교통(DRT)은 고정된 노선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노선버스와 달리 이용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 노선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다수의 이용객을 동시에 운송하는 이동 수단으로써 버스와 택시의 중간적 성격의 교통 수단임.

DRT는 대부분 지역에서 버스와 택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운송사업 경험이 있고 차고・기사 등 인프라를 갖춘 기존 버스・택시 사업자가 면허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기존 운수업계와 DRT 운행에 대하여 협의한 경우에는 갈등의 소지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농어촌 등 외 지역에서는 DRT를 운행할 수 없어, 버스・택시 대신 DRT 운행이 효율적인 지역에서도 DRT를 운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운행 가능

지역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DRT는 대중교통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 주로 도입되는 특성상 지방정부의 운행 손실(운송원가-운송수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현행법상 하나의 차량으로 두 가지 이상의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지역 내 택시·버스 사업자가 DRT 면허를 발급받더라도 사업자가 별도의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해야 함에 따라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지역 운수업계와의 원활한 협의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아울러, 현재 DRT 차량을 호출 및 배차하고 요금 결제 및 차량 운행관리 등을 위한 플랫폼은 민간 플랫폼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요가 많지 않아 민간의 고성능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도 비싼 플랫폼 수수료를 부담(차량 1대당 연간 2~3천만원) 하면서 DRT를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임.

이에, 농·어촌과 농·어촌과 인접한 지역(동지역 포함) 간 교통편의를 제고하거나 기존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을 추진하면서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를 DRT로 대체하는 등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DRT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또한, 기존 버스 사업자와 택시 사업자 등이 DRT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지 등을 두 사업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여 DRT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 버스·택시 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을 높여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되, 같은 시간대

에는 두 운송 사업을 동시에 경영할 수 없도록 하고 경영하는 운송 사업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7조).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고성능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형 DRT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DRT 운영 비용을 낮추고 DRT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법률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가목 중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을 “어촌(이하“농·어촌”이라 한다) 내에서 운행하거나 농·어촌과 농·어촌과 인접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동 지역을 포함한다) 간 교통편의 제고를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다. 기존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을 추진하면서 기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대체하는 등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경우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에 필요한 차량, 차고

및 부대시설 등을 각 사업에 공동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차량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두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5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경우 승객이 운영 중인 운송 사업의 종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차량 호출, 배차, 운임·요금의 결제 및 운행관리 등을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항,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가. ----------어촌(이하“농·어촌”이라 한다) 내에서 운행하거나 농·어촌과 농·어촌과 인접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동 지역을 포함한다) 간 교통편의 제고를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기존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을 추진하면서 기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대체하는 등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 ---------- ---------- ---------- ---------- ---------- ---------- -----시・도지사-------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 ⑤ (생 략)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경우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에 필요한 차량, 차고 및 부대시설 등을 각 사업에 공동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차량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두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자동차 표시) (생 략)	제17조(자동차 표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운송사업자는 제5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경우 승객이 운영 중인 운송 사업의 종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0조의2(수요응답형 여객자동

	차운송사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차량 호출, 배차, 운임·요금의 결제 및 운행 관리 등을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